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12. 22 선고 2021가단2260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11. 24.

판 결 선 고 2021. 12.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88,95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28.부터 2021. 12.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1,900,29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감축 및 원인 보충서 부분 송달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2019. 7. 19.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07. 11. 19. 700만 원(변제기 2008. 1. 18. 이하 '이 사건 제1차 차용'이라 한다), 2012. 6. 20. 500만 원(변제기 2012. 7. 20. 이하 '이 사건 제2차 차용'이라 한다), 2013. 9. 10. 500만 원(변제기 2013. 11. 10. 이하 '이 사건 제3차 차용'이라 한다), 2014. 2. 28. 800만 원(변제기 2014. 3. 10. 이하 '이 사건 제4차 차용'이라 한다), 2016. 3. 23. 400만 원(변제기 2016. 4. 23. 이하 '이 사건 제5차 차용'이라 한다)을 각 이자 월 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에게 2008. 2. 3.부터 2019. 6. 24.까지 이 사건 각 차용원리금의 변제로 합계 6,96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망인의 대여금 반환청구권을 단독으로 상속받았고(망인의 배우자 D, 망인의 자녀인 E, F, 피고 사이의 2019. 10. 25.자 상속재산협의분할), 이에 따라 원고 등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합77470호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3. 25. 그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하하였다(2021. 4. 10. 소취하 종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망인에게 지급한 위 이자 명목 금원 중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였다는 전제 하에, 피고에 대하여 그 반환을 구하고 있다.

2) 먼저 원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각 차용금에 대하여 월 5%의 비율로 계산한 각 이자를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중 당시 적용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한 부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바(계산은 별지 기재와 같다), 망인은 원고에게 그 합계인 31,900,299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다음으로 피고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 반환채무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망인의 대여금 반환 청구권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연히 피고가 망인의 위 부당이득반환채무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피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망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청구권은 남아 있지 않고 오히려 부당이득반환채무만 있을 뿐이라는 사정을 알았음에도 이를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분할협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망인의 위 부당이득반환채무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상당한 7,088,955원(= 31,900,299원 × 2/9, 원 미만 버림) 부분만 상속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4)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7,088,95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감축 및 원인 보충서 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9. 28.부터 피고가 그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22.까지는 민법 소정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내지 항변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과 원고의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차용금 이외에도 아직 변제되지 않은 추가 차용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 내지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원고의 반박 및 갑 제9호증(G 확인서) 기재 등에 비추어, 피고 주장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아직 변제되지 않은 추가 차용금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내지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성욱

이자 및 원금변제 총당내역서(원금700만원)

입 금 일	입 금 액	이자(연30%)	원금상환	남은원금	부당이득금	비 고
2008년 02월03일	350,000	175,000	175,000	6,825,000		
03월 19일	350,000	170,625	179,375	6,645,625		
04월 24일	350,000	166,141	183,859	6,461,766		
07월 21일	350,000	161,544	188,456	6,273,310		
09월 19일	350,000	156,833	193,167	6,080,143		
10월 20일	350,000	152,004	197,996	5,882,146		
11월 20일	350,000	147,054	202,946	5,679,200		
12월 22일	350,000	141,980	208,020	5,471,180		
2009년 03월19일	350,000	136,779	213,221	5,257,959		
04월 20일	350,000	131,449	218,551	5,039,408		
06월 19일	350,000	125,985	224,015	4,815,393		
07월 20일	350,000	120,385	229,615	4,585,778		
08월 20일	350,000	114,644	235,356	4,350,423		
09월 21일	350,000	108,761	241,239	4,109,183		
10월 21일	350,000	102,730	247,270	3,861,913		
11월 20일	350,000	96,548	253,452	3,608,461		
12월 21일	350,000	90,212	259,788	3,348,672		
2010년 01월20일	350,000	83,717	266,283	3,082,389		
02월 22일	350,000	77,060	272,940	2,809,449		
03월 22일	350,000	70,236	279,764	2,529,685		
04월 20일	350,000	63,242	286,758	2,242,927		
05월 24일	350,000	56,073	293,927	1,949,000		
06월 21일	400,000	48,725	351,275	1,597,725		
07월 20일	350,000	39,943	310,057	1,287,668		
08월 20일	350,000	32,192	317,808	969,860		
10월 11일	350,000	24,247	325,753	644,107		
11월 01일	350,000	16,103	333,897	310,209		
11월 24일	350,000	7,755	310,209	0	32,036	
12월 22일	350,000				382,036	
2011년 01월31일	350,000				732,036	
02월 27일	350,000				1,082,036	
03월 23일	350,000				1,432,036	
04월 25일	350,000				1,782,036	

05월 31일	350,000				2,132,036	
07월 02일	350,000				2,482,036	
07월 27일	350,000				2,832,036	
08월 31일	350,000				3,182,036	
10월 04일	350,000				3,532,036	
11월 01일	350,000				3,882,036	
12월 05일	350,000				4,232,036	
2012년 01월02일	350,000				4,582,036	
02월 01일	350,000				4,932,036	
03월 29일	350,000				5,282,036	
05월 03일	350,000				5,632,036	
06월 13일	350,000				5,982,036	
07월 05일	350,000				6,332,036	
08월 01일	350,000				6,682,036	
08월 28일	600,000				7,032,036	제2-2호종과 이자합산지급
10월 01일	600,000				7,382,036	제2-2호종과 이자합산지급
10월 31일	600,000				7,732,036	제2-2호종과 이자합산지급
12월 05일	600,000				8,082,036	제2-2호종과 이자합산지급
2013년 01월03일	600,000				8,432,036	제2-2호종과 이자합산지급
02월 08일	7,000,000				15,432,036	원금700만원상환
02월 20일	600,000				15,782,036	제2-2호종과 이자합산지급
계	25,600,000	2,817,964	7,000,000		15,782,036	

이자 및 원금변제 총당내역서(원금500만원)

입 금 일	입 금 액	이자(연30%)	원금상환	남은원금	부담이득금	비 고
2012년 07월24일	250,000	125,000	125,000	4,875,000		
08월 28일	600,000	121,875	128,125	4,746,875		제2-1호종과 이자환산지급
10월 01일	600,000	118,672	131,328	4,615,547		제2-1호종과 이자환산지급
10월 31일	600,000	115,389	134,611	4,480,936		제2-1호종과 이자환산지급
12월 05일	600,000	112,023	137,977	4,342,959		제2-1호종과 이자환산지급
2013년 01월03일	600,000	108,574	141,426	4,201,533		제2-1호종과 이자환산지급
02월 08일	3,000,000		3,000,000	1,201,533		
02월 20일	600,000	30,038	219,962	981,571		제2-1호종과 이자환산지급
02월 20일	2,000,000		981,571	0	1,018,429	
계	6,750,000	731,571	5,000,000		1,018,429	

이자 및 원금변제 총당내역서(원금500만원)

입금일	입금액	이자(연30%)	원금상환	남은원금	부당이득금	비고
2013년 10월10일	250,000	125,000	125,000	4,875,000		
11월 11일	250,000	121,875	128,125	4,746,875		
12월 10일	250,000	118,672	131,328	4,615,547		
2014년 01월10일	250,000	115,389	134,611	4,480,936		
02월 10일	250,000	112,023	137,977	4,342,959		
03월 10일	650,000	108,574	141,426	4,201,533		계2-4호종과 이자합산지급
04월 14일	250,000	105,038	144,962	4,056,571		
05월 12일	250,000	101,414	148,586	3,907,986		
06월 10일	250,000	97,700	152,300	3,755,685		
07월 12일	250,000	93,892	156,108	3,599,577		
08월 11일	250,000	89,989	160,011	3,439,567		
09월 12일	250,000	85,989	164,011	3,275,556		
10월 15일	250,000	81,889	168,111	3,107,445		
11월 12일	250,000	77,686	172,314	2,935,131		
12월 12일	250,000	73,378	176,622	2,758,509		
2015년 01월12일	250,000	68,963	181,037	2,577,472		
02월 11일	250,000	64,437	185,563	2,391,909		
03월 11일	250,000	59,798	190,202	2,201,706		
04월 13일	250,000	55,043	194,957	2,006,749		
05월 12일	250,000	50,169	199,831	1,806,918		
06월 16일	250,000	45,173	204,827	1,602,091		
07월 13일	250,000	40,052	209,948	1,392,143		
08월 12일	250,000	34,804	215,196	1,176,947		
09월 13일	250,000	29,424	220,576	956,370		
10월 13일	250,000	23,909	226,091	730,280		
11월 12일	250,000	18,257	231,743	498,536		
12월 14일	250,000	12,463	237,537	261,000		
2016년 01월13일	250,000	6,525	243,475	17,525		
02월 15일	250,000	438	17,525	0	232,037	
03월 14일	250,000				482,037	
04월 13일	250,000				732,037	
05월 11일	250,000				982,037	
06월 14일	250,000				1,232,037	
07월 12일	250,000				1,482,037	

08월 12일	250,000				1,732,037	
09월 13일	250,000				1,982,037	
10월 11일	250,000				2,232,037	
11월 14일	250,000				2,482,037	
12월 13일	250,000				2,732,037	
2017년 01월 17일	250,000				2,982,037	
02월 13일	250,000				3,232,037	
03월 13일	250,000				3,482,037	
04월 14일	250,000				3,732,037	
05월 10일	250,000				3,982,037	
06월 12일	250,000				4,232,037	
07월 10일	250,000				4,482,037	
08월 10일	250,000				4,732,037	
09월 11일	250,000				4,982,037	
10월 12일	250,000				5,232,037	
11월 10일	250,000				5,482,037	
12월 11일	250,000				5,732,037	
2018년 01월 10일	250,000				5,982,037	
02월 12일	250,000				6,232,037	
03월 12일	250,000				6,482,037	
04월 10일	250,000				6,732,037	
05월 10일	250,000				6,982,037	
06월 11일	250,000				7,232,037	
07월 10일	250,000				7,482,037	
08월 13일	250,000				7,732,037	
09월 10일	250,000				7,982,037	
10월 10일	250,000				8,232,037	
11월 12일	250,000				8,482,037	
12월 11일	250,000				8,732,037	
2019년 02월 11일	250,000				8,982,037	
03월 11일	250,000				9,232,037	
04월 10일	250,000				9,482,037	
05월 10일	250,000				9,732,037	
06월 10일	250,000				9,982,037	
07월 11일	250,000				10,232,037	
계	17,250,000	2,017,963	5,000,000		10,232,037	

이자 및 원금변제 총당내역서(원금800만원)

입금일	입금액	이자(연30%)	원금상환	남은원금	부당이득금	비고
2014년 03월 10일	650,000	200,000	200,000	7,800,000		제2-3호통과 이자합산지급
04월 28일	400,000	195,000	205,000	7,595,000		
05월 29일	400,000	189,875	210,125	7,384,875		
06월 30일	400,000	184,622	215,378	7,169,497		
07월 29일	400,000	179,237	220,763	6,948,734		
09월 01일	400,000	173,718	226,282	6,722,453		
10월 01일	400,000	168,061	231,939	6,490,514		
10월 29일	400,000	162,263	237,737	6,252,777		
11월 28일	400,000	156,319	243,681	6,009,096		
12월 31일	400,000	150,227	249,773	5,759,324		
2015년 01월 28일	400,000	143,983	256,017	5,503,307		
01월 28일	8,000,000		5,503,307	0	2,496,693	
계	12,400,000	1,903,307	8,000,000		2,496,693	

이자 및 원금변제 총당내역서(원금400만원)

입 금 일	입 금 액	이자(연25%)	원금상환	남은원금	부당이득금	비 고
2016년 04월26일	200,000	83,360	116,640	3,883,360		
05월 24일	200,000	80,929	119,071	3,764,289		
06월 27일	200,000	78,448	121,552	3,642,737		
07월 26일	200,000	75,915	124,085	3,518,652		
08월 25일	200,000	73,329	126,671	3,391,980		
09월 27일	200,000	70,689	129,311	3,262,669		
10월 25일	200,000	67,994	132,006	3,130,663		
12월 26일	200,000	65,243	134,757	2,995,906		
2017년 01월24일	200,000	62,435	137,565	2,858,341		
02월 24일	200,000	59,568	140,432	2,717,909		
03월 24일	200,000	56,641	143,359	2,574,550		
04월 24일	200,000	53,654	146,346	2,428,204		
05월 24일	200,000	50,604	149,396	2,278,807		
06월 24일	200,000	47,490	152,510	2,126,298		
06월 26일	200,000	44,312	155,688	1,970,610		
07월 24일	200,000	41,068	158,932	1,811,677		
09월 25일	200,000	37,755	162,245	1,649,433		
10월 24일	200,000	34,374	165,626	1,483,807		
11월 24일	200,000	30,923	169,077	1,314,729		
12월 26일	200,000	27,399	172,601	1,142,128		
2018년 01월23일	200,000	23,802	176,198	965,930		
02월 23일	200,000	20,130	179,870	786,060		
03월 26일	200,000	16,381	183,619	602,442		
04월 23일	200,000	12,555	187,445	414,997		
05월 24일	200,000	8,649	191,351	223,645		
06월 26일	200,000	4,661	195,339	28,306		
07월 24일	200,000	590	28,306	0	171,104	
08월 27일	200,000				371,104	
09월 27일	200,000				571,104	
10월 24일	200,000				771,104	
11월 26일	200,000				971,104	
12월 24일	200,000				1,171,104	
2019년 01월24일	200,000				1,371,104	
02월 25일	200,000				1,571,104	

03월 25일	200,000				1,771,104	
04월 23일	200,000				1,971,104	
05월 27일	200,000				2,171,104	
06월 24일	200,000				2,371,104	
계	7,600,000	1,228,896	4,000,000		2,371,104	

부당이득금 합계 : 31,900,299

